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4
----------	-----

제출년월일 : 1993.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 이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임용자격기준 조항을 두고 있어 새로운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개정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규채용 업무가 지연되는 등 행정능률의 저해요인이 있어 임용자격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하여 행정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가.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함.
- 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 다. 학생수련의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함.
- 라. 시행규칙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3. 근거 법령

- 가. 국가공무원법 (1991.11.30 법률 제4408호) 제2조 제4항
- 나.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1989. 3. 2 대통령령 제12661호) 제3조 제3항
- 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1989. 4. 1 총무처예규 제217호)
- 라. 지방공무원법 (1991.12.14 법률 제418호) 제2조 제4항

4. 개정조례안 : 불 임

5. 참 고 사 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임

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1985.11. 1 조례 1449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한다.

제2조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한다.

제4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행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 (생략)</p> <p>제2조 (적용범위) <u>충청북도교육감소속</u></p> <p>제3조 (생략)</p> <p>제4조 (임용자격)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임용자격에 관하여 <u>총무처장관이</u>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p> <p>④ 학생수련요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행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적용범위) <u>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u></p> <p>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4조 (임용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는 직무분야</u> 및 상당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삭제)</p>
상당계급	임용자격
5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일반권 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로서 전역 중령 또는 소령인 자 ·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유관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일반권 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로서 전역 대위 또는 중위인 자 ·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유관기관단체에서 재직 봉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현행		개정안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유관 기관 단체에서 재직 봉사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8급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일반근사교육요원 경력소 소지자로서 전역하사관 또는 병인 자 	
9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용예정분야와 관련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유관 유관기관 단체에서 재직봉사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제5조 - 제14조 (생략) (신설)		제5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